KOSHA GUIDE

C - 40 - 2011

- (다) "상부 케이지"라 함은 갱폼 케이지의 4단 작업발판중 거푸집 설치·해체 작업 용으로 사용되는 상부 2단 작업발판 구성 부분을 말한다.
- (라) "하부 케이지"라 함은 미장·치장(견출) 작업용으로 사용되는 하부 2단 작업발 판 구성 부분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갱폼의 제작

4.1 제작원칙

- (1) 갱폼은 외부벽체 콘크리트 거푸집으로서의 기능과 외부벽체에서의 위험작업들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발판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 구조적·설비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2) 갱폼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일단 현장에 투입되면 사용과정에서 변형·수정하기 가 어려우므로 제작 계획시 사용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·반영하여야 한다.

4.2 갱폼제작시의 안전설비 기준

4.2.1 인양고리(Lifting bar)

(1) 갱폼 인양고리는 갱폼의 전하중을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안전율 5이상의 부 재를 사용하여 인양시 갱폼에 변형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